

『퇴직연금 정기예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

(2025.09.01 현재, 세전, 연)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
상 품 특 징	퇴직연금 제도 시행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																								
가입 대 상	퇴직연금 사업자																								
계 약 기 간	1.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6개월, 1년이상 5년이하 연 단위 가입 가능 2. 디플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년 3.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1일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 자유로이 지정																								
적용 이자율	신규가입일 (또는 재예치일)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 기간별 약정이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
중도해지 적용이자율	1. 특별중도해지(분할인출) 사유 및 적용 이자율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,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계약기간</th> <th>특별중도해지 이자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년미만</td> <td>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 이자율</td> </tr> <tr> <td>1년이상</td> <td>1. 경과기간 1년미만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2. 경과기간 1년이상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2.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적용대상</th> <th>경과기간</th> <th>중도해지금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</td> <td>1개월 미만</td> <td>연0.10%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</td> <td>연0.15%</td> </tr> <tr> <td>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</td> <td>연0.2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</td> <td>6개월 이상</td> <td>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등률 x 경과율 (단, 연0.20% 미만 시 연0.20% 적용)</td> </tr> <tr> <td>32개월 미만</td> <td>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%</td> </tr> <tr> <td>32개월 이상</td> <td>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계약기간	특별중도해지 이자율	1년미만	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 이자율	1년이상	1. 경과기간 1년미만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2. 경과기간 1년이상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	적용대상	경과기간	중도해지금리	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	1개월 미만	연0.10%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0.15%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0.20%	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	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등률 x 경과율 (단, 연0.20% 미만 시 연0.20% 적용)	32개월 미만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%	32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%
계약기간	특별중도해지 이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
1년미만	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 이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
1년이상	1. 경과기간 1년미만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2. 경과기간 1년이상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
적용대상	경과기간	중도해지금리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	1개월 미만	연0.10%																							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0.15%																							
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0.20%																							
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	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등률 x 경과율 (단, 연0.20% 미만 시 연0.20% 적용)																							
	32개월 미만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%																							
32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%																								
(주 1) 차등률 : 경과기간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 개월이상 9 개월미만 경과시 60%, 9 개월이상 11 개월미만 경과시 70%, 11 개월이상 경과 시 90%																									
(주 2) 경과율 : 경과일수/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DB	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재예치																								
DC/IRP	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합니다. (다만,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합니다.) 디플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
일 부 해 지	가능	1.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 해지 가능. 2. 분할 해지시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
예금자보호	DC/IRP 대상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1억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
	DB 비대상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
	예금보호법 비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

[유의사항] 상품 가입전 반드시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,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(1599-11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연금상품지원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상품에 대한 문의는 영업점, 고객센터 1599-1111(서비스코드: 예금상담 0,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상품 가입 후 의문 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,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 또는 인터넷홈페이지(www.hanabank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『퇴직연금 정기예금』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상품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, 「거치식예금약관」, 「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등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
-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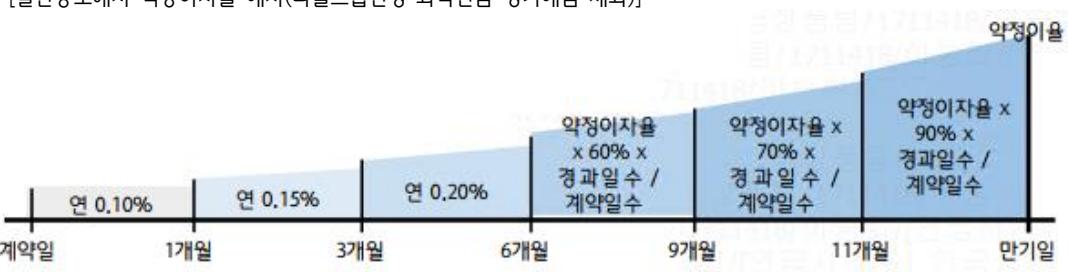
- 상 품 명 : 『퇴직연금 정기예금』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: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과 비대면 채널 등의 계좌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2025.09.01. 현재, 세전, 연)

구 분	내 용
가입 대상	퇴직연금 사업자
상 품 유 형	정기예금
거 래 방 법	영업점, 인터넷뱅킹 등
가 입 금 액	1원 이상
계 약 기 간	1.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6개월, 1년이상 5년이하 연 단위 가입 가능 2. 디플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년 3.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1일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 자유로이 지정
이자지급방식	만기일시지급식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계좌에 압류,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압류 :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※가압류 :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 ※질권설정 :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·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
적용 이자율	신규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온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※ 신규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
만기 이자율	신규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온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
특별종도해지 사유 및 적용이자율	1. 특별종도해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한 퇴직연금 종도인출 사유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□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□ 수탁자의 사임□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□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□ 가입자의 사망□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

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이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(개인형IRP에 한함) □ 가입자의 해외이주(개인형IRP에 한함) <p>2 특별중도해지(분할인출사유) 이자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계약기간 1년 미만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 □ 계약기간 1년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과기간 1년 미만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• 경과기간 1년 이상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율 <p>※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: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) 경과기간 1년 이상 ~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</p> <p>3. 단, 아래의 경우 신규일(또는 재예치일) 적용된 이자율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																	
일반중도해지 적용이자율	<p>1. 일반 중도해지 이자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62 855 1457 1208"> <thead> <tr> <th>적용대상</th><th>경과기간</th><th>중도해지금리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</td><td>1개월 미만</td><td>연 0.10%</td></tr> <tr> <td>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</td><td>연 0.15%</td></tr> <tr> <td>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</td><td>연 0.20%</td></tr> <tr> <td>6개월 이상</td><td>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등률 x 경과율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디플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</td><td>32개월 미만</td><td>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%</td></tr> <tr> <td>32개월 이상</td><td>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%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(주 1) 차등률 : 경과기간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 개월이상 9 개월미만 경과시 60%, 9 개월이상 11 개월미만 경과 시 70%, 11 개월이상 경과 시 90%</p> <p>(주 2) 경과율 : 경과 일수/계약 일수 (단, 경과 일수는 계약 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 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 (예시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시 1.564%로 적용</p> <p>[일반중도해지 적용이자율 예시(디플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제외)]</p> 	적용대상	경과기간	중도해지금리	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	1개월 미만	연 0.10%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0%	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등률 x 경과율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	디플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	32개월 미만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%	32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%
적용대상	경과기간	중도해지금리																
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	1개월 미만	연 0.10%																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																
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0%																
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차등률 x 경과율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																	
디플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	32개월 미만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80%																
	32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약정이자율 x 90%																
이자계산방법	<p>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</p> <p>[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× 약정이자율 × 약정개월수 ÷ 12</p> <p>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</p>																	
만기 후 이자율	예금의 만기 후 이자율은 없습니다.																	
만기처리방법	<p>1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</p> <p>1) 『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』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</p>																	

	<p>2) 「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」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</p> <p>3) 전 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별도의사표시에 따라 정합니다</p> <p>4)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영업일에 재예치하며,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.</p> <p>2.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(IRP) 또는 개인형(IRP) 퇴직연금</p> <p>1) 이 예금은 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 제 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다만,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됩니다.</p> <p>2) 『디플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』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전 호에 따라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</p>
계약해지방법	퇴직연금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지 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합니다.
예금 해지시 불이익	만기 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 적용
분할해지	<p>1.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 해지 가능.</p> <p>2. 일부 해지시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 적용</p> <p>3. 단,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,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에는 일부 해지 횟수에서 제외하며,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경우 가입자별로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 가능</p>
예금자 보호여부	<p>DC/IRP 대상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1억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</p> <p>DB 비대상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p>
거래제한	이 예금은 양도, 질권설정, 담보제공이 불가하며,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할 수 없습니다.
통장발행	이 예금은 통장 발행이 불가합니다
위법계약해지권	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,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설명의무위반 등 위법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당행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님에게 해당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.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.

3

유의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9 조제 1 항, 동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-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연금상품지원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상품에 대한 문의는 영업점, 고객센터 1599-1111 (서비스코드: 예금상담 0,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상품 가입 후 의문 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,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 또는 인터넷홈페이지(www.hanabank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